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1720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진
담당변호사 김상훈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준만
변 론 종 결 2021. 4. 21.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11.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22. 접수 제1054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9. 11.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9. 11. 25. 접수 제549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금액 10억 원, 보증기한 2016. 9. 29.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7. 기업은행에게 C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376,8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6.으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그 후 조건이 변경되어 보증금액은 212,000,000원, 보증기한은 2020. 10. 30.로 변경되었다(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1. 5. 기업은행에게 C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60,000,000원, 보증기한 2016. 1. 4.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고, 그 후 조건이 변경되어 보증기한은 2020. 12. 31.로 변경되었다(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12. 4. C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금액 5억 원, 보증기한 2015. 12. 3.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C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고, 같은 날 기업은행에게 C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500,000,000원, 보증기한 2020. 11. 27.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그 후 조건이 변경되어 보증금액 451,000,000원, 보증기한 2020. 11. 27.로 변경되었다(이하 '3차 보증'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9. 29. C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7. 9. 28.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기업은행에게 C의 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7. 9. 28.로 정한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으며, 그 후

조건이 변경되어 보증금액 248,000,000원, 보증기한 2020. 9. 25.로 변경되었다(이하 ‘4차 보증’이라 한다).

바. B은 2019. 11. 2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는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B은 2019. 11. 22. C와의 거래업체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25.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아. 이 사건 아파트는 2020. 1. 22. D 주식회사가 가압류를 한 후 원고, 중소기업은행, E단체 등에서 가압류를 하였고, 2020. 6.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자. 이 사건 토지는 2020. 3. 19. 원고가 가압류를 한 후 E단체, 중소기업은행에서 가압류를 하였다.

차. C는 2020. 3. 24. 신용보증사고로 기업은행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0. 5. 25. 기업은행에게 위 1 내지 4차 보증으로 인한 C의 대출채무 원리금
합계 1,376,789,500원(원금 1,360,330,647원+이자 16,458,85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C로부터 7,414,422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1,369,375,078원이다.

카.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2019. 11.경 기준으로 아래와 같고,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 상태였다.

- 적극재산 : 이 사건 아파트 514,000,000원, 이 사건 토지 145,564,000원(2018. 12. 말경 감정금액이지만 동일한 것으로 추인), 김포시 F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공장(G동, H동, I동) 약 65,462,250원, 총 합계 725,026,250원

- 소극재산 : 원고에 대한 채무 1,371,000,000원, D(주) 622,727,680원, 중소기업은행 1,378,706,961원 및 49,765,847원, E단체 64,000,000원, J(주) 12,978,926원, K(주) 10,610,333원, L조합 약 94,000,000원, 총 합계 3,603,789,747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대법원 1978. 11. 28. 선고 77다2467 판결,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1995. 12. 26. 선고 95다2965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B은 2019. 11.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0. 1. 22. D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후 원고를 포함한 다수 금융기관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었고, C는 2020. 3. 24. 원고가 보증한 기업은행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당시 C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개월 후인 2020. 1. 22.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가압류가 진행되었고 C는 2020. 3. 24. 기업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C와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은 2019. 11.경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상회하여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였고, 그러던 중 C와의 거래업체인 피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소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에 철강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거래를 하였을 뿐 C 및 B의 재정 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어음결제가 누적되어 있어서 현금결제 또는 담보제공 없이는 자재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자 B이 담보를 설정해 준다고 하여 계속적 거래를 이어 나가기 위해 담보를 설정받았고, 현재 피고는 C의 어음 부도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바 악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증인 B의 증언에 의하면, C가 2019년경 당진 지역에 플랜트 전문 지점을 설립하고 플랜트 발전을 수주하면서 급격하게 자재가 많이 발생하여 필요한 자재 물량이 증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재 납품을 요청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플랜트 발전 등을 수주했다는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C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오랫동안 장기 거래를 하면서 담보 없이 거래를 지속하다가 신용보증사고 발생 몇 개월 전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

고, 그 계약 체결 후에 피고의 납품 물량이 갑자기 증가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무자력 상태에서 다수 채권자 중 일부 채권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일응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앞서 든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진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부천시 동[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슬래브지붕 지상 3층 공동주택

1층 412.0728㎡

2층 412.0728㎡

3층 408.1528㎡

4층 408.1528㎡

지층 406.300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84.882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부천시

대 31293.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1293.8분의 144.8787

2. 경기도 양평군

답 964㎡